

-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2005년 4월 11일

회부일자 : 2005년 4월 12일

제안 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추어 조정하고, 종합토지 세 세목의 폐지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근 거를 삭제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상속 및 무상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 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9조)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액별 최소 1,000분의 0.1에서 최대 1,000분의 0.3을 인하함(안 제59조)

- 공동시설세의 납기를 주택외 건축물·선박에 대한 세액과 주택의 건축물분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주택의 건축물분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함(안 제60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함(안 제77조 내지 제79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이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며,
 - 공동시설세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1,000분의 0.1에서 1,000분의 0.3을 인하하는 한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세액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납기와 맞춰 7월(7.16-31)과 9월(9.16-30) 2회 납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는 삭제됩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세법 개정과 연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조치로 여겨집니다.
- 다만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즉 종전과 대비한 세수변동예상액,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정도는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공동시설세의 경우 매년 7월에 부과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변경된 납기에 맞춰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되면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검토됩니다.
- 특히 주택의 건축물분 납세자들은 1회차 납부만으로 “납부가 끝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2회차 고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내지 이중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주민홍보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붙 임 :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